

의안번호	제108호
의결 연월일	2011년 1월 일 (제297회)

**충청북도 6.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
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1년 1월 10 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

의안 번호	10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년 1월 10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6.25전쟁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기 위하여, 『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』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,
-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됨 (안 제2조)
-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정함 (안 제3조)
-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(안 제5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 : 해당없음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충청북도 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된다.

제3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

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7조(수당 등)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,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존속기간) 실무위원회는 6.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0.9.27] , [법률 제10190호, 2010. 3.26 제정]

제4조(6.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) ① 6.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(이하 “납북자”라 한다)와 전시납북자가족(이하 “납북자가족”이라 한다)의 심사·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.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6.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
2.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
3.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4.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
5.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
6.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, 서신교환·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
7. 기념사업,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통일부장관·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6.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) ①

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소속으로 6.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1.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
2.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해당 시·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